

공 고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 - 278호

관보 제19622호(2019.11.7.)에 게재된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7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중 변동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 11. 15.

서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7. 신청서 접수, 다. 신청서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청인은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임대예정 사실확인서’는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임대인(건물주)의 인적사항,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7. 신청서 접수, 다. 신청서류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관보 제19622호(2019.11.7.) 168쪽 아래에서 7번째 행
9. 기타,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미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9. 기타,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이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관보 제19622호(2019.11.7.) 169쪽 아래에서 3번째 행